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52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최혁진 · 이성윤 · 김우영  
윤준병 · 정혜경 · 전진숙  
정춘생 · 김용만 · 김문수  
윤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후단 중 “어렵지”를 “복잡하거나 어렵지”로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

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위원회가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 . ----  
-----  
-----  
-----복잡하거나 어렵  
지-----.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가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